

투자위험등급 :  
1 등급  
[매우높은위험]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 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 간 이 투 자 설 명 서

이 투자설명서는 슈로더 아시아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에 대한 투자설명서 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슈로더 아시아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의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슈로더 아시아 에셋 인컴 증권투자신탁(주식혼합-재간접형)
2. 집합투자기구 분류: 투자신탁, 증권(주식혼합-재간접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3. 집합투자업자 명칭: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4. 판 매 회 사: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금융투자협회 ([www.kofia.or.kr](http://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schroders.co.kr](http://www.schroders.co.kr))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5. 작 성 기 준 일: 2015년 7월 28일
6.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2015년 7월 31일
7. 모집(매출)증권의 종류 및 수: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모집(매출) 총액: 10 조좌]
8. 모집(매출)기간(판매기간): 추가형으로 계속 모집 가능
9. 존속기간: 별도로 정해진 신탁계약기간은 없음
10. 집합투자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 전자문서: 금융위원회(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 [www.kofia.or.kr](http://www.kofia.or.kr)
    - 서면문서: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본점, 금융위원회, 판매회사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자자는 간이투자설명서 대신 투자설명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시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하게 검토한 뒤 투자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상에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며,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4.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 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 환매금액에서 후취판매수수료가 차감되므로 환매금액보다 실수령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10.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이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인 경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투자자의 금융 정보가 국세청 및 해당 국가(투자자의 국적상 국가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될 수 있으며, 판매회사는 투자자의 국적 또는 세법상 거주지국 확인을 위하여 계좌 개설시 수집된 정보 이외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1.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 홈페이지 ([www.schroders.co.kr](http://www.schroders.c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 간이투자설명서는 자본시장 및 금융산업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에 근거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정보

### 1. 투자목적

이 집합투자기구는 아시아 주식과 아시아 채권등에 주로 투자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수익과 자본성장 달성을 추구하는 집합투자기구(이하 “피투자집합투자기구”라 한다)의 집합투자증권을 법 시행령 제94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에 집합투자자산총액의 100%이하를 투자합니다.

※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투자자들은 투자에는 위험이 수반되며,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기본 운용전략

이 집합투자기구는 최초 설정일 이후 외국집합투자기구(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Schroder Asian Asset Income Fund(USD C Accumulation Class)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며, 일부 투자신탁의 설정 및 환매를 위한 목적이나, 환헤지를 목적으로 현금자산을 일부 보유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인 Schroder Asian Asset Income Fund(USD C Accumulation Class)는 Schroder Umbrella Fund II의 하위펀드로서 아시아 주식과 아시아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여 중장기적인 수익과 자본성장 달성을 추구합니다.

※ 상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과 목적에 부합하는 다른 집합투자기구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업자는 결정된 변경사항을 관련 법령과 이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서에 명시된 수시공시 절차에 따라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공지할 예정입니다.

#### (2) 세부 운용전략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

##### ● 편입대상 집합투자증권의 선정기준

- ▶ 투자가치가 있고 지속적인 배당금을 제공하는 아시아 기업의 주식 증권 및 아시아 소재 정부, 정부기관, 국제기구, 기업이 발행한 것으로서 투자가치가 있는 금리수익을 제공하는 (투자시점 혹은 그 이후 시점을 기준으로) 투자등급이나 투자등급 미만의 채권, 기타 고정 금리부 및 변동금리부 증권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목적 달성과자 하며, 투자등급 미만이거나 혹은 투자등급이 없는 채권과 채무성 증권에 자산의 상당 부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 ▶ 집합투자업자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아시아 이외 지역에서 발행된 증권,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 간접적으로 실물자산(에너지, 금속, 농산물 등 커머더티) 및/또는 이와 유사한 투자기구와 같은 기타 자산군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REITs는 반드시 SFC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방침이 피투자 REITs의 배당방침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자산배분 전략

- ▶ 아시아 주식, 아시아 채권, 기타 자산군, 현금성 자산 간 적극적인 자산배분을 통하여 투자목적 달성과자 합니다.
- ▶ 가치평가, 거시경제 데이터, 유동성과 같은 경제 기초 여건 및 정량적 요소에 복합적으로 기초하여 4단계 경제순환 국면 (회복기, 활황기, 후퇴기, 침체기)에 따라 자산배분을 달리하는 경제순환 국면에 따른 자산배분 방식을 활용합니다.
- ▶ 현금성 자산은 개별 자산군으로 취급되며 필요한 경우 불리한 시장상황에서 가격 하락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됩니다. 각 자산군별 예상 자산배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시아 주식: 30 - 70%, 아시아 채권: 30 - 70%, 기타 자산군: 0 - 20%, 현금성 자산: 0 - 30%

##### ● 종목 선정 및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 ▶ 아시아 주식 포트폴리오의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진정한 주주가치,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흐름, 지속가능하고 높은 배당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회사들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 ▶ 아시아 채권 포트폴리오의 경우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가치평가, 수급 상황, 유동성과 같은 경제 펀더멘털 및 기술적 견해에 기초하여 투자가치가 있는 이자수익과 자본성장을 제공하는 종목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 ▶ 금리 변화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견해에 기초하여 듀레이션을 관리합니다. 듀레이션은 금리

변화 대비 포트폴리오 가치 민감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듀레이션 관리는 금리 변화가 포트폴리오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금리 인상은 채권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집합투자업자는 금리 인상에 따른 영향을 줄이기 위해 포트폴리오의 듀레이션을 낮추고자 할 것입니다.

- 위험 회피 목적으로 파생상품을 활용할 수 있으나 집합투자업자가 반드시 그러할 의무는 없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활용하는 위험회피 전략이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위험 노출을 완전히 효과적으로 상쇄할 수 있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 극단적인 시장상황에서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현금성 자산을 10% 이상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순자산가치의 10% 범위 내에서 중국 A 주식, 중국 B 주식 및/또는 이와 연관된 증권에 투자하고자 합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중국 A 주식 및 중국 B 주식에 10%를 초과하여 투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수익자에게 1개월 전에 통지하고 그에 따라 본 등록신청서를 갱신할 것입니다.
- 현재 중국 A 주식에 직접 투자할 계획은 없으며, 중국 본토 증권 연동 상품 (China market access products)과 같은 금융상품을 통해 중국 A 주식에 대해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본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중국 본토 증권 연동 상품 및/또는 중국 A 주식의 성과와 연계된 파생상품에 대한 동일 발행인에 대해 총위험평가액을 순자산가치의 10% 이하로 제한합니다. 전술한 10% 한도는 SFC의 승인을 얻어 본 등록신청서를 개정할 경우에만 초과될 수 있습니다.

### (3) 위험관리

#### • 위험관리방법

이 집합투자기구는 운용위험 관리를 위하여 관련 시스템 (Best Investment Global System "BIGS")을 활용하고 있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상품과 포트폴리오가 성과 목표와 이에 상응하는 리스크 프로파일이 서로 부합하도록 관리하는 Schroders Investment Risk Management Framework (SIRF)를 활용하여 다각적인 위험 평가와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 환헤지

이 투자신탁 내 외화자산에 대하여 담당 운용전문인력의 재량으로 100% 수준까지 원/달러 선물환 또는 선물 등을 통해 환헤지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상황 변동시에는 집합투자업자의 재량에 따라 수시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필요한 경우에 통화관련 장내 및 장외파생상품(선물, 옵션, 스왑 등)을 매매할 수 있습니다.

**※환헤지와 관련된 상세 내용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참조지수: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45% + JP Morgan Asia Credit Index 45% + Call rate 10%

**※상기 참조지수는 단순한 참조지수로서 투자신탁재산내 유동성 및 환헤지에 의한 성과등의 요소는 참조지수 내에는 반영되지 않으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실제 운용은 본 참조지수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운용되지 아니하므로 이 집합투자기구의 성과는 참조지수의 성과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참조지수 산출시 증가, 환율등의 적용시점 차이에 따라 투자신탁 성과와 괴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 3. 주요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아니합니다.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자산배분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아시아 주식, 아시아 채권, 현금성 자산 및 기타 자산을 투자 대상으로 하여 자산배분전략에 따라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기구에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써, 자산배분에 대한 예측이 맞지 않을 경우 손실이 예측한 규모 이상으로 커지거나 수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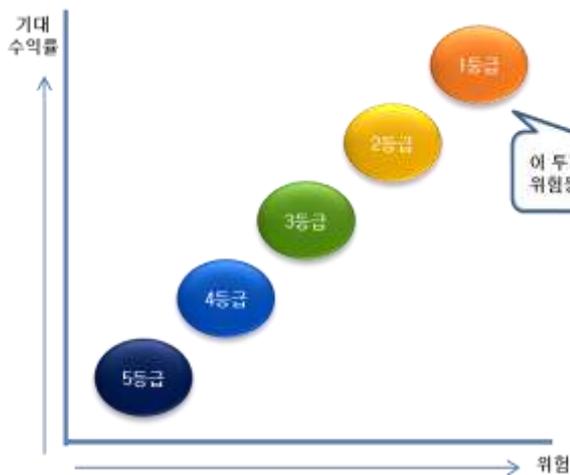
<p>시장위험 및 개별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아시아 주식 및 아시아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며, 상당한 위험성(채권의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 포함)을 가지는 투자 전략과 기법을 활용하여 증권에 투자하며 적극적으로 증권을 거래 함에 따라 해외 주식 및 해외 채권등에 직접 투자하는 위험과 유사한 위험을 부담할 수 있으며, 증권의 가격 변동, 금리, 환율등 본질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다양한 국내외 경제변수등에 연동되어 수익이 변동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시장의 경우 선진국 시장보다 변동이 더 심하므로, 선진국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지연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대상국가의 특별한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신탁재산의 가치는 국내 거시경제지표의 변화보다 국제 경제전망, 금리변동, 환율변동등 해외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신용상태의 변화, 재무불이행등 개별기업의 다양한 고유위험으로 인해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하이일드 채권등의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이 주로 투자하는 외국 집합투자기구는 아시아 하이일드 채권등 편입하고 있으며, 하이일드 채권등 투자등급 이하의 증권의 경우 높은 신용위험과 변동성을 보일 수 있으며 여기에는 신용등급이 없거나 부실증권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발행자들의 재무상황 악화, 신용상태 악화, 부도발생등으로 인하여 원리금 지급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못하거나 지급되지 않을 위험이 크며, 이로 인하여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이일드 채권등은 발행물량이 적고 시장이 협소하여 시장에서 매각시 수요가 전혀 없거나 부족하여 매각할 수 없거나 매각이 가능하더라도 적정가격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경기침체기나 고금리 시기에는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의 부실율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p>
<p>재간접 투자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외국 집합투자증권등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피투자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 가격하락등에 따라 투자원금액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신탁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내에 불가피하게 중도환매를 하는 경우 환매수수료 부담이 발생하여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으며, 다른 투자신탁보다 일반적으로 환매기기간이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집합투자증권은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정기간의 시차를 두고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 결과 당해 투자신탁에 대하여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일정기간 이전 가격으로 평가된 가격입니다. 환매청구일과 환매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자산인 외국 증권의 가격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요 투자대상인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략의 상세한 내역 전부 또는 일부가 공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다집합투자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직접 자산을 투자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회비용과 손실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p>
<p>환율변동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다양한 통화로 표시되는 해외유가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신탁재산을 투자함에 따라 관련 통화의 환율 변동에 따른 신탁재산의 가치 변동에 노출됩니다. 이 투자신탁은 달러화로 환전된 자금 및 달러화로 표시되는 투자금액이 원-달러 환율변동위험에 노출되는 것을 헤지하기 위해 장내외 파생상품에 대한 헤지목적의 거래를 실시할 예정이지만 현실적으로 완전 헤징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대상 파생상품의 급격한 가격 변동, 거래상대방 부재등의 경우 및 외환관련 파생시장 혼란 발생시 등에는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규모가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통화관련 환위험 회피 도구가 유효하지 못하여 적절한 환위험 회피가 곤란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환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상기 요인등으로 인한 환차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p>
<p>파생상품 투자위험</p>	<p>파생상품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래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 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훨씬 높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피투자집합투자기구는 위험회피 및 투자 목적으로 옵션, 선물 및 선도계약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옵션거래는 높은 수준의 위험을 수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옵션을 매도하는 것은 옵션을 매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더 큰 위험을 수반합니다. 펀드가 수령하는 프리미엄은 고정되어 있지만, 펀드는 그 금액을 초과한 손실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펀드는 매수인이 옵션을 행사하는 위험에 노출되는데, 이 경우 펀드는 현금으로 옵션을 결제하거나 기초자산을 취득하거나</p>

	<p>교부하여야 합니다. 펀드 내 환해지를 위하여 일부 선물환 등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장외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더 높은 거래상대방 위험이 수반됩니다. 거래상대방의 거래불이행 발생시, 펀드는 예상된 지급금 또는 자산을 수령할 수 없게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미실현 수익을 상실하게 될 수 있습니다.</p>
<p>국가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신탁재산을 아시아 주식 및 아시아 채권등에 주로 투자하는 외국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함에 따라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에 더 많이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법령 및 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 전반적인 투명성 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장의 증권은 외국인의 투자 한도, 넓은 매매호가 차이, 거래소의 제한된 개장시간과 거래량 부족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유동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고, 선진 시장에 투자하는 투자신탁과 비교하여 가격변동의 위험이 더 클 수 있고 환매가 지연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변동성은 정치적·경제적 요인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으며 법률, 거래 유동성, 결제, 증권의 양도 및 통화 등의 요소들에 의해서 더 커질 수 있습니다.</p>
<p>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p>	<p>이 투자신탁은 일본 증시에 상장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제한,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 및 사회전반적인 투명성부족으로 인한 공시자료의 신뢰성 등의 위험에 노출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특정 국가에 상장되어 거래됨에 따라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배당소득, 세후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 투자신탁이 투자한 집합투자기구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 불리한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이 투자신탁의 성과와 운용방법 등에도 유사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p>
<p>미국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 (FATCA)하의 세금신고 의무</p>	<p>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이하 “FATCA”)는 2010년 3월 미국 고용회복 촉진을 위한 법률(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의 일부로서 제정되었습니다. 이 규정은 미국 이외 지역에 소재한 금융기관(“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는 회사로 하여금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 또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적용을 받는 기타 외국 기관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특정 정보를 미국 국세청(“미국세청”)에 직접 보고하고 이를 위하여 신원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세청과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곳으로서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를 준수하여야 하는 금융기관은 회사에 미국원천소득 및 미국 소득을 창출하는 증권의 총 매각대금에 대하여 30%의 원천징수세를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펀드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의 시행을 위한 상위규정인 미 재무부 규정(US Treasury Regulations)에 의거해서가 아니라 정부간 협약(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IGA”) Model 1을 체결한 한국의 당해 IGA의 효력을 인정하는 입법 조항에 의거하여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2014년 7월 1일부터 회사는 투자자의 미국 조세 지위를 확인할 목적으로 투자자로부터 특정 정보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특정 미국인, 미국 소유의 비미국법인(US owned non-US entity), 비참가 해외금융기관에 해당하거나 혹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지 아닐 경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러한 투자자에 관한 정보를 한국 조세당국에 보고하며, 한국 조세당국은 이를 다시 미국세청에 보고합니다. 회사가 이러한 규정에 따라 행위할 경우 회사는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따른 원천징수세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펀드의 수익자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판매중개회사들은 회사의 기존 방침 상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 목적상 미국인의 계산으로 펀드의 수익증권을 모집하거나 판매할 수 없으며 그러한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수익증권의 양도가 금지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미국인이 수익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회사는 그 재량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수익자들은 해외금융기관 계좌신고제도(FATCA)에 의거 “특정 미국인”의 정의가 현행 “미국인”의 정의 보다 더 확대된 범위의 투자자를 포함하게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합니다.</p>
<p>해지 위험</p>	<p>투자신탁을 설정 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 미만인 경우 또는</p>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감위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투자설명서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1. 매입, 환매, 전환기준”에서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에 관련된 상세 투자위험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이 투자신탁이 대부분의 자산을 투자하는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주된 투자대상인 아시아 주식과 아시아 채권에 30%~70% 범위로 투자하는 비율조정형 자산배분 집합투자기구인 점을 고려하여 5등급 중 1등급에 해당되는 수준(매우 높은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는 상품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국가 및 관련 산업 경제등 여건 변화와 투자대상자산의 가격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주식, 채권등과 관련된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특히 하이일드채권등의 변동성등에 따른 위험과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이해하며, 가장 높은 수준의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투자자들에게 적합합니다. 이 위험등급분류는 슈로더투자신탁운용(주)의 내부 기준에 따른 위험등급입니다. 판매회사는 판매회사별 특성을 반영하여 위험등급을 재분류할 수 있습니다.

5. 운용전문인력에 관한 사항(2015.7.27현재)

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인력

성명	출생연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수	다른 운용자산 규모(수탁고기준)	
장정주	1978	책임 운용역	10	1조 4,400억	- 기업은행 자금운용실 - 동양선물 - 슈로더투신(2005.7 ~) - 운용경력 7년 - 서강대 경영학 학사, CFA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단, 투자신탁 최초 설정시에는 전체 집합투자기구 수치가 기재됩니다.]

주1) 이 투자신탁은 2014년 6월 10일자로 팀(공동)운용 체제에서 단독운용 체제로 변경되었으며, 상기일자로 기존의 책임운용인력만이 이 투자신탁의 운용인력으로 공시(기존의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상기일자로 말소 처리)되었습니다.

주2)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3) 운용전문인력이 운용 중인 집합투자기구중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의 개수 및 규모: 해당사항 없습니다.

나.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인력

성명	직위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Patrick Brenner	책임운용역 멀티에셋 운용팀 총괄	- 슈로더 홍콩, 싱가포르, 대만, 한국의 멀티에셋 운용부문 총괄 및 홍콩 멀티에셋 운용팀 총괄 - 2013년 11월부터 슈로더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Hong Kong)으로 이동하여 아시아 멀티에셋팀 부총괄 (Deputy Head)로서 운용에 참여, 글로벌 자산배분 위원회 위원 역임

Robin Parbrook	부책임용역 아시아 주식팀 공동펀드매니저	- 현재 홍콩 소재 아시아(일본제외) 주식팀 총책 겸 지역/대안투자 펀드매니저 - 2010년 8월 홍콩에서 아시아 토탈 리턴 및 기타 아시아 주식 전략을 운용 - 2011년 7월 아시아(일본제외) 주식팀 총책으로 재선임
Manish Bhatia	부책임용역 아시아 주식팀 공동펀드매니저	- 현재 홍콩 소재 (일본제외) 아시아 주식팀 펀드매니저 - 2008년 슈로더 입사. 인도와 대만 펀드를 포함 다수의 아시아 태평양 포트폴리오를 운용 (2006. 3. - 2008. 8.)
Angus Hui	부책임용역 아시아 채권팀 펀드 매니저	- 홍콩 소재 채권 포트폴리오 매니저 - 2005년 아시아 채권 신용 포트폴리오 운용 시작 - 아시아(일본제외) 채권 포트폴리오의 신용 투자 담당이자 (신용전략, 신용증권선정 등) RMB 채권의 대표 포트폴리오 매니저

주1) 이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은 공동운용방식(팀운용)으로 운용됩니다. 책임운용전문인력은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수립, 투자 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전문인력이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운용전문인력 관련 사항은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2) 2015년 7월 31일 기준으로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책임운용전문인력은 리처드 콜란(Richard Coghlan)에서 패트릭 브레너(Patrick Brenner)로 변경됩니다.

6. 투자실적추이(연도별 수익률 추이)

(단위: %)

기간	최근 1년차 13.11.01 ~14.10.31	최근 2년차 12.11.01 ~13.10.31	최근 3년차	최근 4년차	최근5년차
펀드	8.95	7.92	-	-	-
참조지수	4.84	6.30	-	-	-

주1) 참조지수: MSCI AC Asia Pacific ex Japan 45% + JP Morgan Asia Credit Index 45% + Call rate10%

주2) 마지막 수익률 측정대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수익률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주3) 연도별 수익률은 해당되는 각1년간의 단순 누적수익률로 투자기간동안 이 투자신탁 수익률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주4) 종류형투자신탁의 경우 연도별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집합투자업자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작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수익률은 투자신탁의 기간에 따른 운용 실적으로 투자자의 투자시기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질 수 있으며, 과거의 투자실적이 미래의 투자실적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II 매입·환매 관련 정보

1. 보수 및 수수료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집합투자기구 종류	가입자격	수수료율	
		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A	제한없음	주1)납입금액1.0%이 내(선취)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A-e	판매회사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납입금액0.5%이내 (선취)	
C	제한없음	없음	
C-e	판매회사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I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개인 고객, 50억원 이상~500억원 미만의 법인고객		
F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 운투자(단, 법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제15호 내지 제17호는 제외), 10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특정금전신탁		
V (변액보험)	자본시장법제251조에 의한 보험회사의 변액보험		

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WRAP ACCOUNT)를 보유한 자		
S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에 한함	주1)3년미만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이내(후취)	
S-P	집합투자증권에 한정하여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은 회사(경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가 개설한 온라인 판매시스템에 회원으로 가입한 투자자 전용이며,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한 고객에 한함		
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한 가입자	없음	없음
C-CP (퇴직연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퇴직연금 사업자 및 개인형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자		
부과기준		매입시/ (S: 3년미만 환매시)	환매시

주1) 종류A, A-e의 선취판매수수료율, 종류S의 후취판매수수료율은 상기 명시된 수수료율내에서 판매회사별로 차등적용할 수 있으며, 판매회사별 선취/후취판매수수료율은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환매수수료 부과를 위해 이익금 산정시 재투자좌수에서 발생한 손익은 제외합니다.

주3) 판매회사는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 투자신탁의 신탁계약서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 통장거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목적식 투자 고객 등에 대하여 환매수수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미국 내에서 또는 미국인의 계정으로 또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모집되거나 매각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미국인이 수익증권의 실질적인 소유자일 경우, 회사는 그 재량으로 해당 수익증권을 강제 환매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정식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집합투자기구 종류별 부과비율 (연간,%)							
	집합투자업자 보수	판매회사 보수	신탁업자 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 보수	기타비용	총보수·비용	합성총보수·비용 (피투자신탁의 총보수·비용 포함)	증권거래비용
A	0.10	0.70	0.04	0.02	0.0097	0.8697	1.8061	0.0004
A-e	0.10	0.35	0.04	0.02	0.0088	0.5188	1.4551	0.0004
C	0.10	1.00	0.04	0.02	0.0097	1.1697	2.1061	0.0004
C-e	0.10	0.50	0.04	0.02	0.0091	0.6691	1.6055	0.0004
I	0.10	0.30	0.04	0.02	-	0.4600	1.4500	-
F	0.10	0.05	0.04	0.02	-	0.2100	1.2000	-
V(변액보험)	0.10	0.04	0.04	0.02	-	0.2000	0.2000	-
W	0.10	0.00	0.04	0.02	-	0.1600	1.1500	-
S	0.10	0.22	0.04	0.02	-0.0047	0.3753	1.3116	0.0002
S-P	0.10	0.18	0.04	0.02	-	0.3400	0.3400	-
C-P	0.10	0.99	0.04	0.02	-0.0880	1.0620	1.9983	-
C-CP (퇴직연금)	0.10	0.80	0.04	0.02	-	0.9600	0.9600	-
부과시기	최초설정일로부터 매 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사유발생시

주 1) 기타비용은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제외)으로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하였으므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종류형 포함)인 경우 수치화된 추정치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3.09.07 ~ 2014.09.06]

주 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작성되었으므로 실제비용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투자신탁인 경우 수치화된 비율 산출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2013.09.07 ~ 2014.09.06]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금융비용 및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른 발행분담금(발행분담금 총액 중 회계기간 초일부터 2013.8.28.까지의 부분은 이 투자신탁에서 부담하고, 2013.8.29. 이후 부분은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가 부담)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 4)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 5)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이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하되,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알 수 없을 경우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에 발생하는 보수와 기타비용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6) 상기 표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 연간 0.99%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7) 상기 도표는 작성기준일 현재의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를 대상으로 작성하였으며, 미설정된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의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을 총보수·비용과 단순 합산하여 산정하였습니다.

1,000만원(표시통화가 외화인 경우 1,000만원 수준의 해당통화 금액)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구분	집합투자기구 종류	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A	283	664	1,068	2,197
	A-e	198	510	843	1,784
	C	216	666	1,142	2,457
	C-e	165	510	880	1,918
	I	148	462	797	1,745
	F	123	383	663	1,461
	V(변액보험)	122	380	658	1,450
	W	118	367	636	1,403
	S	134	418	723	1,589
	S-P	136	424	733	1,609
	C-P	205	633	1,086	2,343
	C-CP(퇴직연금)	98	307	533	1,182

주 1) 투자자가 1,000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를 및 총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2) 작성기준일 현재 상기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표(누적)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피투자 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 비율 연간 0.99%를 예상치로 사용하여 산출하였으며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주 3) 종류 A와 종류C의 총보수·비용이 일치하는 시점은 대략 3년4개월이 되는 시점이나 추가납입 또는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4) 종류S의 경우 총보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였으며, 후취판매수수료는 포함하여 산정하지 않았습니다.

주 5) 기준일 현재 미설정된 종류 투자신탁의 경우 피투자집합투자기구의 총보수·비용이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 6) 2015년 7월 28일 현재 설정되어 있는 투자신탁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기준일 현재 미설정된 종류 투자신탁의 경우 예상치를 사용하였습니다.

**2. 과세**

※ 다음의 투자신탁 또는 수익자 관련 세무사항에 대한 안내는 참고용으로 제시된 것이며, 향후 세법의 변경 및 정부정책 변화 등의 사유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와 상담을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의 과세문제와 관련된 의사결정 및 과세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b>환급세액</b>	=	<b>외국납부세액</b>	X	<b>*환급비율</b>
*환급비율: ( 과세대상소득금액 / 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금액 ) 단, 환급비율 > 1 이면 1, 환급비율 < 0 이면 0 으로 함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 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 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상장주식등에 대한 매매·평가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발생했음에도 다음과 같은 이유 등으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 국내상장주식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 나. 국내상장주식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보다 큰 경우(투자신탁이 환위험을 헤지할 목적으로 행한 외환 선도거래(FX Forward)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 부분이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되기 때문임)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개인, 일반법인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법인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소득과 법인의 다른 소득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종류 C-P, S-P 수익증권 가입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연 1,800만 원 한도 (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세액공제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4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2% 단,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입액분부터 적용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2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연금외 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6.5% (지방소득세 포함,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 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 13.2% 분리과세(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종류 C-CP(퇴직연금) 가입자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 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세액공제(2015.1.1 부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연도의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연 700만원 중 적은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의 다양성:

퇴직연금은 퇴직연금 수령시 일시금 또는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으며, 퇴직급여 수령 방식에 따라 과세 체계가 다양하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연금 수령시 사적연금액(퇴직연금, 연금저축 등)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가능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산정방법	당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 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을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당해 종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공시장소	판매회사영업점, 집합투자업자( <a href="http://www.schroders.co.kr">http://www.schroders.co.kr</a> )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a href="http://www.kofia.or.kr">http://www.kofia.or.kr</a> )의 인터넷홈페이지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으며, 해외의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의 경우 기준가격이 산정·공시되지 않는 날에도 해외시장의 거래로 인한 자산의 가격변동으로 인하여 펀드재산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매입 및 환매 절차: 판매회사 영업시간에만 가능.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 또한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도 가능(단, 판매사별로 가능하지 않은 경우도 있음).

주1)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하여 처리합니다.  
 주2) 환매의 경우, 판매회사가 해산·허가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입 절차]

구분	제 1 영업일(D)	제 3 영업일(D+2)	제 4 영업일(D+3)
17 시(오후 5 시) 이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17 시(오후 5 시) 이후 매입시	자금납입일		기준가격 적용일 집합투자증권 교부일

[환매 절차]

구분	제 1 영업일	제 4 영업일(D+3)	제 5 영업일(D+4)	제 8 영업일(D+7)	제 9 영업일(D+8)
17 시(오후 5 시) 이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17 시(오후 5 시) 이후 환매시	환매청구일		기준가격 적용일		환매대금 지급일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증권 신고서 및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II 요약 재무정보

이 투자신탁의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중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동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2 기( 2013.09.07 - 2014.09.06 )	삼일회계법인	적정
제 1 기( 2012.09.07 - 2013.09.06 )	삼일회계법인	적정

가. 요약재무정보(단위: 원)

항 목	요약 대차대조표	
	제 2기 ( 2014.09.06 )	제 1기 ( 2013.09.06 )
운용자산	84,799,714,887	395,912,635,490
증권	77,649,131,368	383,185,305,336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7,150,583,519	12,727,330,154	
기타 운용자산	0	0	
기타자산	163,293,490	18,516,446,203	
자산총계	84,963,008,377	414,429,081,693	
운용부채	0	0	
기타부채	2,865,816,106	20,611,826,500	
부채총계	2,865,816,106	20,611,826,500	
원본	69,971,525,584	377,412,305,324	
수익조정금	-22,870,401,981	49,010,463,210	
이익잉여금	34,996,068,668	-32,605,513,341	
자본총계	82,097,192,271	393,817,255,193	
<b>요약 손익계산서</b>			
<b>항 목</b>	<b>제 2기</b>	<b>제 1기</b>	
	<b>( 2013.09.07 - 2014.09.06 )</b>	<b>( 2012.09.07 - 2013.09.06 )</b>	
운용수익	35,000,200,102	-32,624,232,787	
이자수익	89,352,166	293,004,669	
배당수익	0	0	
매매/평가수익(손)	34,910,847,936	-32,917,237,456	
기타수익	13,582,106	58,351,136	
운용비용	0	0	
관련회사 보수	0	0	
매매수수료	0	0	
기타비용	17,713,540	39,631,690	
당기순이익	34,996,068,668	-32,605,513,341	
매매회전율	0.00	0.00	

주 1) 요약재무정보 사항중 매매회전율이란 주식매매의 빈번한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해당 운용기간동안 매도한 주식가액을 같은 기간동안 평균적으로 보유한 주식가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1회계년도동안의 평균적인 주식투자규모가 100억원이고, 주식매도금액 또한 100억원인 경우 매매회전율은 100%(연기준)로 합니다.

주 2) 결산 분배금이 있는 경우 계정 분류의 차이로 인하여 요약 재무정보의 부채 및 자본 항목과 나. 대차대조표의 금액이 상이합니다.